



의사가 직업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의사의 비밀준수 의무라고 한다. 의사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는 형법 및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 또는 의사의 職에 있었던 자는 그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고(형법 제317조 1항), 의사는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며(의료법 제19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해서는 안된다(동법 제20조). 비밀준수 의무는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보조인도 부담한다.

비밀의 보호는 당사자의 생존기간 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까지도 필요하다. 따라서

권한없이 환자의 비밀을 공표함으로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에 이것이 고의적으로 행해졌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객관적으로 비난받을 과실이 있다면 계약침해와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중대한 침해인 경우에는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격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이와 같은 비밀준수 의무는 의사와 환자사이의 특별한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의사와 환자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환자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 놓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는 환자가 의사의 신뢰 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의무는 환자

의 개인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에 기초를 둔 적절한 의료처치라는 일반적인 공익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비밀준수 의무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는 환자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쉽게 관련지울 수 있는 질병상황에 대한 것도 포함되며 연구나 학문을 위해 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자료양도인은 자료양수인이 취득한 자료가 익명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지식을 통하여 특정환자와의 관련성을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의사가 비밀을 특정인에게 전파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에게 전파하는 것도 비밀준수 의무에 위배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비밀은 물론 제 3자의 비밀도 직업 상 우연히 알게 된 경우에는 역시 보호되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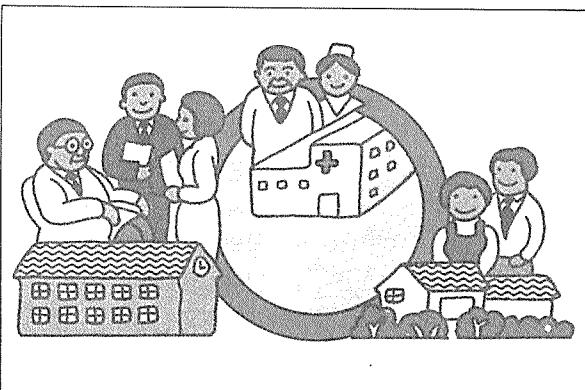
의사가 직업상 그의 직무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환자의 동의를 찾아볼 수 없는 한 의사는 비밀준수 의무의 구속을 받게 된다. 또한, 병원의 상사나 경영자가 의사로서 환자의 진료에 스스로 임하지 않는 한 진료에 임한 다른 의사는 이를 상사나 경영자에 대해서도 환자의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의 비밀준수 의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비밀준수 의무를 절대적인 의무로 인정한다면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비밀준수 의무를 이유로 의사가 증거제출 뿐만 아니라 증언거부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의사의 비밀준수 의무를 완화 내지 면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완화 내지 면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첫째, 의사의 비밀준수 의무는 환자의 개인적 이익보다 우세한 공익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폐기될 수 있다.

예컨대 전염병에 대한 대책이나 환자를



고의적으로  
환자의 비밀을  
공표함으로써  
비밀준수 의무를  
위배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통한 위험의 전파를 막기 위해 의사에게 특정질병에 대해서는 당해 관청에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염병 예방법 제4조 내지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그런데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않지만 비밀준수에 대한 환자의 이익이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파기될 수 있는가? 즉, 공익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비밀준수 의무가 파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밀준수 의무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이 환자와 의사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를 둔 개인적 이익을 앞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의 비밀공표는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국가의 이익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환자가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의사가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뚜렷이 식별된다 하더라도 경찰에게 알리는 것은 비밀준수 의무에 위반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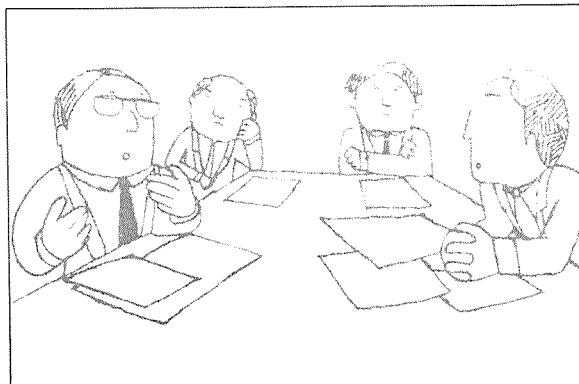
다.

그러나 중대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취급된다. 유괴된 자가 아직 유괴범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괴행위를 끌마치게 하기 위하여 유괴범의 상태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자의 행위로 인하여 어느 누구에게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공익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밀을 파기할 것인지 여부가 의사의 양심에 맡겨져 있다.

둘째, 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비밀을 공표하는 경우에 비밀준수 의무가 완화 내지 면제된다. 즉 의사가 자신의 권리를 오로지 비밀을 공표함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예컨대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의사에 대한 지위를 렬린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소를 제기한 환자에 대해서 의사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



의사의  
비밀준수 의무는  
환자의  
개인적 이익보다  
우세한  
공익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파기될 수 있다.

---

## 비밀준수 의무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는 환자와 관련이 있거나 쉽게 관련지울 수 있는 질병상황 뿐만 아니라, 연구나 학문을 위해 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인식되어어서는 안된다.

여 더 이상 비밀을 준수할 수 없게 된다. 셋째, 환자가 비밀을 포기함으로써 의사의 비밀준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이다. 즉 의사가 환자에 의해 중인으로 채택되거나 환자에 의해 제소되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우도 의사는 비밀준수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비밀의 포기는 포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명시적 또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비밀을 공표하거나 진료비 계산을 위해 질병 보험회사에서 서면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이것에 의해 환자의 이익이 결정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면 공개가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시에 의사의 비밀준수 의무를 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환자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의사의 비밀준수 의무는 소송에 있어서 증언거부나 진료기록부 제출 거부를

통하여 나타난다. 즉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환자의 증상 등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 비밀준수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의사에게 거부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비밀준수 의무가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소송에서의 증언거부권이나 진료기록부 제출 의무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환자가 스스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실의 일부로서 자기의 비밀인 질병 증상을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의사는 비밀준수 의무를 이유로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의료인이 법원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법원의 보조인으로 종사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된다. ④

<필자=한국의료법학회장·고려의대교수>